

1920년대 보통학교 학생들의 교원 배척 동맹휴학*

박 찬 승**

머리말

1. 통계로 본 교원 배척 맹휴의 양상
2. 사례로 본 보통학교 교원 배척 맹휴의 양상
3. 교원 배척 맹휴의 배경

맺음말

머리말

식민지 조선의 교육사 연구는 그동안 주로 제도사 내지는 정책사의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고, 이제는 상당한 성과를 축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학교의 실제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이와 같은 정책사나 제도사 연구를 통해서만 잘 드러나지 않는다. 때문에 식민지시기의 조선 교육의 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1-A00005)

** 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

대표논저 : 2010 『마을로 간 한국전쟁』, 돌베개 ; 201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돌베개 ; 2014 『한국독립운동사』, 역사비평사

상이 어떠했는지를 밝히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제는 이 시기의 교육사를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그러한 시도의 하나로서 1920년대 각급 학교의 현장에서 발생한 동맹휴학, 그 가운데에서도 보통학교의 동맹휴학 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당시 보통학교의 동맹휴학은 학교의 설비 개선이나 조선역사 교수 요구 등을 내걸고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교사의 배척을 내걸고 발생한 맹휴가 가장 많았다. 당시 아직 10대 중반 이하의 보통학교 학생들은 왜 교사나 교장을 배척하며 맹휴를 벌였을까. 이 글은 이러한 물음에서 출발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교원배척과 관련된 초등 학교와 중등 이상 학교 맹휴의 양상을 통계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초등 학교에서의 맹휴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어서 초등 학교 맹휴의 발생 원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원배척과 관련된 맹휴의 사례들을 신문 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보통학교 학생들의 교원배척 운동의 배경을 당시 교원들이 놓여 있었던 주객관적 상황과 관련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보통학교 교원의 양성제도와 관련해서는 김영우, 이원필, 임후남, 박영규, 김광규 등에 의해 이미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¹⁾ 특히 박영규의 연구는 식민지 조선의 교사 양성제도, 특히 사범학교의 변천과정을 시기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으며, 이 글을 작성하는데 배경지식으로서 큰 도움이 되었다. 또 조선인 교원과 일본인 교원의 구성, 임용 과정, 차별대

1) 金英宇, 1987 『韓國近代敎員教育史. 1 : 初等學校 敎員養成教育史』, 正民社
 李元必, 1987 「일제하 교원양성제도 연구」(부산대 박사논문)
 林後男, 2002 「大韓帝國期에 있어서의 初等敎員의 양성」(서울대 박사논문)
 朴永奎, 2005 「植民地朝鮮における敎員養成に関する研究」(九州大學 博士論文)
 金廣珪, 2013 「日帝強占期 朝鮮人 初等敎員 施策 研究」(서울대 박사논문)

우 등에 대해서는 사노 미치오(佐野通夫), 야마시타 다쓰야(山下達也), 혼마 치카게(本間千景) 등의 연구가 있다.²⁾ 특히 야마시타 다쓰야, 혼마 치카게의 연구는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교원에 대한 상세한 연구로서, 역시 이 글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한편 학생들의 동맹휴학과 관련해서는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맹휴 연구는 약간 있지만,³⁾ 보통학교의 맹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고, 당시 교육당국자들의 글과 각종 신문(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중외일보)의 기사 등을 인용하면서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1. 통계로 본 교원 배척 맹휴의 양상

3.1운동 이후 항학열이 폭발한 가운데 총독부도 3면 1교 정책을 펴서 보통학교의 학교 수와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났다. 또 1920년대 말에는 1면 1교 정책을 시작하여 학교 수는 더욱 더 늘어났다. 그 결과 1920년 641개교이던 보통학교 수는 1935년에 2,274개교로 늘어났다. 그러나 중등학교의 숫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고등보통학교는 공사립, 남녀 모두 포함하여 1920년 23개교에서 1935년 45개교로 두 배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러나 학생 수는 1920년 3,727명에서 1935년 20,431명으로 5.5배 정도 늘어났다.⁴⁾

2) 佐野通夫, 1996 『近代日本の教育と朝鮮』, 社會評論社

山下達也, 2011 『植民地朝鮮の學校教員』, 九州大學出版會

本間千景, 2010 『韓國‘併合’前後の教育政策と日本』, 思文閣出版

3) 金淇周, 2010 「光州學生運動 以前 同盟休學의 性格」 『韓國獨立運動史研究』 35

金性玟, 2013 『1929년 광주학생운동』, 역사공간

4) 『朝鮮總督府統計年報』 各年版 참조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학생 수가 이와 같이 늘어나는 가운데, 1920년대에는 학생들의 동맹휴학이 자주 발생했다. 조선총독부경무국이 1929년 3월에 발간한 『조선에서의 동맹휴교의 고찰』이라는 자료를 보면, 앞부분에 1921~1929년 사이의 동맹휴교의 연도별 발생 건수가 기록되어 있다. 이 부분의 기록에 의하면 이 시기에 발생한 맹휴는 모두 404건으로, 초등학교가 192건, 중등학교가 200건, 전문학교가 12건으로 되어 있다.⁵⁾ 그런데 이 자료의 뒷부분에서는, 맹휴의 발생 원인을 1) 학교설비, 교규(校規), 교칙(校則), 학과(學科) 기타에 기인한 맹휴, 2) 교원배치에 관한 맹휴, 3) 학교 내부의 사건과 관련한 맹휴, 4) 생도 간에 발생한 사건에 기인한 맹휴, 5) 지방 문제에 관련된 맹휴, 6) 민족의식 및 좌경사상이 반영된 맹휴 등 여섯 가지로 나누면서, 각각의 경우에 해당되는 맹휴 사건의 통계표를 자세히 제시했다. 이 통계표에 의하면, 같은 시기에 발생한 맹휴 사건은 초등학교의 맹휴가 342건, 중등 이상 학교의 맹휴가 460건이었다고 한다. 이를 합하면 802건이 된다. 물론 이 가운데에는 발생 원인이 여럿이어서 중복 계산된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802건은 앞의 404건의 거의 두 배가 된다. 따라서 앞의 통계는 부정확한 통계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실제로 앞의 통계에 의하면 1924년에는 맹휴 발생건수가 14건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1923년의 57건, 1925년의 48건에 비해 너무 적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뒤의 통계표가 더 신뢰할 만하다고 보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조선에서의 동맹휴교의 고찰』이라는 자료의 뒷부분에 나오는 발생 원인별 맹휴 사건을 중등이상 학교와 초등학교(보통학교)로 나누어 보면 <표 1>, <표 2>와 같다.

5) 朝鮮總督府警務局, 1929 『朝鮮における同盟休校の考察』, 9쪽

<표 1> 중등 이상 학교의 맹휴 발생 건수와 발생 이유

맹휴이유	1921년	1922년	1923년	1924년	1925년	1926년	1927년	1928년	계	백분비
설비개선	8	15	9	3	3	6	26	17	87	18.9
학과시간	2	6	2	2	0	1	2	7	22	4.8
훈육교칙	1	1	1	2	0	2	1	11	19	4.1
교원배척	11	26	28	9	14	29	75	59	251	54.6
교내사건	0	5	0	1	3	1	0	5	15	3.3
생도충돌	0	0	0	0	0	0	0	0	0	0.0
지방문제	0	0	1	0	0	0	0	0	1	0.2
사상문제	3	4	1	1	1	2	17	36	65	14.1
계	25	57	42	18	21	41	121	135	460	100.0

출전 : 조선총독부경무국, 1929.3.『조선에서의 동맹휴교의 고찰』, 21-46쪽

<표 2> 초등학교의 맹휴 발생 건수와 발생 이유

맹휴이유	1921년	1922년	1923년	1924년	1925년	1926년	1927년	1928년	계	백분비
설비개선	2	10	12	1	0	7	12	2	46	13.4
학과시간	0	9	2	0	2	2	4	0	19	5.6
훈육교칙	0	7	6	1	5	6	4	10	39	11.4
교원배척	7	23	18	8	38	32	36	21	183	53.5
교내사건	1	5	6	1	4	6	3	3	29	8.5
생도충돌	1	3	2	0	2	2	3	0	13	3.8
지방문제	0	0	1	0	1	1	1	0	4	1.2
사상문제	1	0	2	2	0	1	2	1	9	2.6
계	12	57	49	13	52	57	65	37	342	100.0

출전 : 조선총독부경무국, 1929.3.『조선에서의 동맹휴교의 고찰』, 21-46쪽

<표 1> <표 2>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초등 학교에서의 맹휴가 중등 이상의 학교에서의 맹휴에 못지않게 많았다는 것이다. 초등 학교에서 발생한 맹휴 342건은 전체 맹휴 802건의 42.6%를 차지한다. 그리고 1925,26년에는 초등 학교에서의 맹휴 발생 건수가 중등 이상 학교에서의 맹휴 발생 건수보다 많았다. 그것은 아마도 초등 학교의 숫자가 중등 이상 학교의 숫자보다 월등히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 초등 학교 맹휴의 발생 건수는

1920년대 전반과 후반에 큰 차이가 없으나, 중등 이상 학교의 경우에는 1927, 28년에 들어서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중등 이상 학교에 독서회와 같은 각종 서클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맹휴의 이유이다. 중등 이상의 학교에서는 교원배척이 54.6%, 학교설비 개선 요구가 18.9%, 사상문제(민족의식 및 좌경적 사상의 영향)가 14.1%를 차지했다. 그리고 초등 학교에서는 교원배척이 53.5%, 학교설비 개선 요구가 13.4%, 엄격한 훈육과 교칙에 대한 반발이 11.4%를 차지했고, 사상문제는 2.6%에 지나지 않았다. 즉 초등 학교에서는 아직 민족 의식이나 좌경적 사상의 영향으로 인한 맹휴 건수는 적었던 것이다.

맹휴 발생 이유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교원 배척’이 중등 이상의 학교나 초등 학교를 막론하고 가장 많았으며, 전체 발생 건수 가운데 50%를 넘게 차지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등 이상이나 초등 학교를 막론하고 학생들의 맹휴를 분석할 때에는 교원배척과 관련된 맹휴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배척이 이유가 된 맹휴의 발생 건수를 연도별, 학교급별로 다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교원배척과 관련된 맹휴의 연도별, 학교급별 발생 건수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계(백분비)
중등이상	11	26	28	9	14	29	73	59	249(57.4)
초 등	7	23	18	8	38	32	38	21	185(42.6)
계	18	49	46	17	52	61	111	80	434(100)

출전 : 조선총독부경무국, 1929.3. 『조선에서의 동맹휴교의 고찰』, 26-27쪽

<표 3>에서 보면, 교원배척과 관련된 맹휴는 중등 이상 학교에서 좀 더 많이 발생했지만,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42.6%를 차지할 만큼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925,26년에는 초등 학교의 경우가 중등

이상 학교의 경우보다 더 많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또 초등, 중등 이상을 막론하고 1920년대 후반에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교원 배치와 관련된 맹휴의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초등 학교, 중등 이상 학교, 관공립과 사립학교, 배척당한 교원의 민족별 구분 등과 관련하여 나누어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교원배치의 원인 분석

교원배치의 원인	학교 구분		배척당한 교원			계	합계	백분비*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			
인격 및 소행, 언행에 대한 불만	중등 이상	관공립	26	4	0	30	60	24.1
		사립	6	19	5	30		
	초등	관공립	31	24	0	55	63	34.1
		사립	2	6	0	8		
교수법에 대한 불만	중등 이상	관공립	29	6	0	35	82	32.9
		사립	17	30	0	47		
	초등	관공립	18	11	0	29	38	20.5
		사립	2	7	0	9		
교원의 자격에 대한 불만	중등 이상	관공립	10	1	0	11	38	15.3
		사립	4	23	0	27		
	초등	관공립	1	1	0	2	3	1.6
		사립	0	1	0	1		
교원의 엄격함에 대한 불만	중등 이상	관공립	5	1	0	6	9	3.6
		사립	0	3	0	3		
	초등	관공립	9	2	0	11	12	6.5
		사립	0	1	0	1		
생도의 처우에 대한 불만	중등 이상	관공립	3	0	0	3	8	3.2
		사립	2	2	1	5		
	초등	관공립	13	9	0	22	28	15.1
		사립	0	6	0	6		
(문제)교사의 처리에 대한 불만	중등 이상	관공립	1	0	0	1	1	0.4

	초등	사립	0	0	0	0	11	6.0
		관공립	6	3	0	9		
		사립	0	2	0	2		
교사의 훈계 및 처벌에 대한 불만	중등 이상	관공립	0	0	0	0	0	0
		사립	0	0	0	0		
	초등	관공립	4	5	0	9	9	4.9
		사립	0	0	0	0		
민족적 의식에 기인	중등 이상	관공립	4	0	0	4	7	2.8
		사립	1	2	0	3		
	초등	관공립	0	1	0	1	1	0.5
		사립	0	0	0	0		
교원간의 불화에 기인	중등 이상	관공립	1	0	0	1	4	1.6
		사립	0	3	0	3		
	초등	관공립	1	3	0	4	4	2.2
		사립	0	0	0	0		
계급의식에 기인	중등 이상	관공립	0	0	0	0	0	0
		사립	0	0	0	0		
	초등	관공립	0	1	0	1	1	0.5
		사립	0	0	0	0		
기타	중등 이상	관공립	17	3	0	20	40	16.1
		사립	7	12	1	20		
	초등	관공립	8	3	0	11	15	8.1
		사립	0	4	0	4		
계	중등 이상	관공립	96	15	0	111	249	100
		사립	37	94	7	138		
	초등	관공립	91	63	0	154	185	100
		사립	4	27	0	31		
	계		228	199	7	434	434	

* 백분비는 학교급별, 즉 중등 이상 학교와 초등 학교로 나누어 그 안에서의 백분비를 말한다.

<표 4>에서 우선 교원배치의 원인을 학교급별로 보면, 중등 이상 학교의 경우에는 1) 교수법에 대한 불만, 2) 인격 및 소행, 언행에 대한 불만,

3) 교원의 자격에 대한 불만 순으로 나타나고, 초등 학교의 경우에는 1) 인격 및 소행, 언행에 대한 불만, 2) 교수법에 대한 불만, 3) 생도의 처우에 대한 불만 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중등 이상 학교의 경우에는 교원이 학생들에 대해 인격적 모독과 관련된 언행을 삼가지만, 초등 학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중등 이상 학교의 경우에는 관공립과 사립 학교에서 발생 건수가 111건, 138건으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는 <표 5>에서 보듯이, 중등학교인 고등보통학교의 경우, 공립과 사립 학교의 숫자가 비슷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등 학교의 경우에는 관공립 학교가 154건, 사립학교가 31건으로 관공립학교의 경우가 월등하게 많다. 이는 초등 학교인 보통학교의 경우, 사립학교의 수가 공립학교에 비해 크게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립 보통학교와 사립 보통학교의 교원배치 맹휴 건수가 약 5대 1인데, 공립 보통학교와 사립 보통학교가 약 20대 1의 비율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립보통학교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표 5> 1920년대 공사립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의 수

연도	공립 보통학교	사립 보통학교	공립고등 보통학교	공립여자고등 보통학교	사립고등 보통학교	사립여자고등 보통학교
1921	755	36	11	2	10	5
1922	900	44	12	2	8	5
1923	1,040	56	14	2	8	5
1924	1,152	63	15	2	8	5
1925	1,242	73	15	2	8	8
1926	1,309	81	15	4	9	9
1927	1,395	81	15	6	9	9
1928	1,463	81	15	6	9	9

출전 :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각년판 참조.

다음으로 배척을 받은 교원들의 민족별 구분을 살펴보면, 중등 이상 학교의 경우 일본인이 103명, 조선인이 109명, 외국인이 7명이고, 초등 학교의 경우 일본인이 95명, 조선인이 90명으로 나타난다. 중등 이상 학교나 초등 학교에서 배척받은 일본인과 조선인 교사의 수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등학교의 경우 일본인 교사와 조선인 교사의 숫자가 약 4:3 정도의 비율로 일본인이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조선인 교사들이 배척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초등 학교의 경우 일본인 교사와 조선인 교사의 비율이 2:5 정도로 조선인 교사가 더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일본인 교사가 배척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경찰 당국은 중등 학교 이상에서는 일본인 교사는 100명 가운데 8명, 조선인 교사는 100명 가운데 18명이 배척을 받고 있는 셈이라고 하였다. 그 원인에 대해서 경찰 당국은 중등학교에는 사립학교가 많은데, 동맹휴교는 사립학교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사립학교에는 조선인 교사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⁶⁾ 또 초등 학교에서는 일본인 교사는 100명 가운데 4명, 조선인 교사는 100명 가운데 2명이 배척을 받고 있는 셈이라 하였다. 그러면 초등 학교에서는 일본인 교사가 더 많이 배척받은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표 6> 중등·초등 학교의 일본인 교사

(단위: 명)

연도	공사립 고보 및 여고보 교사		공사립 보통학교 교사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1921년	216	171	1149	2875
1922년	258	180	1428	3424
1923년	327	204	1888	4266
1924년	358	214	2335	4755
1925년	367	231	2171	5672

6) 朝鮮總督府警務局, 1929.3. 『朝鮮における同盟休校の考察』, 39쪽

1926년	398	262	2908	5465
1927년	394	282	2709	5939
1928년	398	299	2446	6401

출전 :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각년판 참조.

<표 7> 보통학교 생도들의 일·선인 교원배척 맹휴 건수

	인격 및 소행과 언행		교수법에 대한 불만		교원 자격 문제		훈육의 엄격함		생도에 대한 처우		(문제) 교사의 처치	
	일	선	일	선	일	선	일	선	일	선	일	선
일선인												
공립	31	24	18	11	1	1	9	2	13	9	6	3
사립	2	6	2	7	0	1	0	1	0	6	0	2
계(%)	33	30	20	18	1	2	9	3	13	15	6	5
	35	33	21	20	1	2	9	3	14	17	6	6
합계 (%)	63		38		3		12		28		11	
	34.1		20.5		1.6		6.5		15.1		6.0	
	교사의 훈계 및 처벌		민족 의식		교원간의 불화		계급의식		기타		계	
	일	선	일	선	일	선	일	선	일	선	일	선
일선인												
공립	4	5	0	1	1	3	0	1	8	3	91	63
사립	0	0	0	0	0	0	0	0	0	4	4	27
계(%)	4	5	0	1	1	3	0	1	8	7	95	90
	4	6	0	1	1	3	0	1	8	8	100	100
합계 (%)	9		1		4		1		15		185	
	4.9		0.5		2.2		0.5		8.1		100.0	

출전 : 조선총독부경무국, 1929.3. 『조선에서의 동맹휴교의 고찰』, 27쪽

<표 7>을 보면, 일본인 교사와 조선인 교사를 막론하고,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배척 원인의 1위는 교사의 인격 및 소행과 언행이었으며, 2위가 교수법에 대한 불만, 3위가 생도에 대한 교사의 처우였다. 그런데 위의 표를 작성한 자의 설명에 의하면,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체벌(體罰)은 ‘생도에 대한 처우’라는 항목에 포함시켰다고 한다.⁷⁾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7) 朝鮮總督府警務局 위의 책, 29쪽

불만이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비슷한 내용인 ‘훈육의 엄격함’, ‘교사의 훈계 및 처벌’ 항목을 합하면 그 비중은 26.5%가 되어 2위를 차지한다. 민족의식이나 계급의식과 연관되어 교사를 배척한 맹휴 건수는 각각 0.5%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인 교사에 대한 배척이 95건으로 조선인 교사에 대한 배척 90건보다 다소 많았고, 일본인 교사와 조선인 교사의 전체 숫자를 고려하면, 일본인 교사에 대한 배척 비중이 더 높았다.

이와 관련하여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은 『조선의 군중』이란 책에서 1919년부터 1925년까지의 맹휴 70건 가운데 교장 및 교원배척이 41건에 달했다면서, 당시 맹휴의 대다수가 생도의 교사에 대한 반감 또는 분개로 부터 야기되었다고 설명했다. 그 가운데 일본인 교사 배척이 24건(교장 11인, 교원 13인), 조선인 교사 배척이 16건(교장 3인, 교원 13인), 외국인 교장 배척이 1건으로, 일본인 교사에 대한 배척이 가장 많았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무라야마는 일본인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구타, 불친절, 무정(無情), 무인격(無人格)과 조선인 학생들의 민족감정이 결합되어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보았다.⁸⁾

한편 전라남도 시학(視學)을 지낸 야스다 야스노리(安田保則)은 학생들의 맹휴 원인 가운데 특히 교사배척은 1) 교사의 학력이 불충분한 경우, 2) 교사의 생도 취급이 지나치게 엄격한 경우, 3) 교사의 품행이 좋지 않은 경우, 4) 교사의 신분이 낮은 경우, 5) 교사가 생도들에게 불친절한 경우, 6) 교사가 생도들을 불공평하게 대하는 경우, 7) 교원이 사이가 나쁜 동료 교사를 배척하기 위해 생도들을 선동하는 경우 등의 경우로 나뉜다고 보았다.⁹⁾ 이 가운데 ‘교사의 생도 취급이 지나치게 엄격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덧붙였다.

8) 조선총독부 관방문서과, 1926 『朝鮮의群衆』, 137~138쪽

9) 安田保則, 1927 『朝鮮教育に安住して』, 大阪屋書店, 京城, 285~289쪽

이동생도를 다루어 갈 때 지나치게 엄격하면 반동이 일어나고, 또 너무나 너그럽게 하면 훈련이 어렵게 된다. 때문에 너그러움과 엄격함 사이의 적당함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지인 교원이 내지에서 와서 내지의 아동 생도와 비교하여 훈련이 덜 된 것을 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너무나 효과를 빨리 내려 한 나머지 동맹휴교를 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¹⁰⁾

즉 일본인 교원들에 대한 배척은 훈련이 덜 된 조선인 학생들의 규율을 잡기 위해 일본인 교원들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생도들을 다루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것이 일본인 교원을 배척하는 맹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표 8>에서 보면, 일본인 교원의 ‘훈육의 엄격함’으로 인해 발생한 맹휴가 9건으로, 조선인 교원의 3건보다 훨씬 많았다.

2. 사례로 본 보통학교 교원 배척 맹휴의 양상

1920~30년대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중외일보 등 조선문 신문에 는 각급 학교 학생들의 동맹휴학(이하 줄여서 ‘맹휴’)이 자주 보도되었고, 그 가운데 보통학교 학생들의 맹휴도 간간히 보도되었다. 이들 보통학교 학생들의 맹휴 가운데 교원 배척을 내건 경우, 배척 이유를 나누어 보면, 1) 교사의 생도에 대한 구타나 체벌, 2) 교사의 실력 부족과 불친절, 무성의, 불공정, 3) 학생에 대한 무리한 처벌, 4) 교사의 좋지 못한 품행, 5) 조선역사 과목을 가르치지 않는 것, 6) 교장이나 교사의 민족차별의식 등으로 구분된다.

학생들은 맹휴에 돌입할 때 대부분 학교 당국이나, 군 또는 도 학무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맹휴에 돌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

10) 安田保則, 위의 책, 286쪽

서 학교측이나 경찰의 압박에 의해 맹휴가 좌절되고 만 경우도 있고, 맹휴까지는 가지 않고 진정서만 제출한 경우도 있었다. 아래에서는 맹휴와 진정서 제출 사건까지 포함하여 교원 배척운동의 사례를 원인별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사례가 적은 3)의 경우를 2)와 함께 하나로 묶고, 역시 사례가 적은 5)와 6)을 하나로 묶어 정리해보고자 한다.

<표 8>부터 <표 11>까지는 당시 신문에 보도된 것 가운데 원인이 비교적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들을 정리한 것이다.¹¹⁾ 이 글에서는 당시 신문에 보도된 사례들이 당시의 대표적인 사건들이었다고 보고, 이를 정리하는 것을 통해 당시 교원배척운동의 대략적인 모습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또 학생들의 교원배척운동은 1920년대에 주로 발생했으나, 1930년대에도 간간히 발생했으므로, 여기에서는 1930년대의 주요 사례까지 같이 검토하고자 한다.

<표 8> 교사의 생도 구타나 체벌로 인한 맹휴

발생 연월	발생학교	맹휴의 원인과 경과	기사 출전
1921. 5.	경기도 안성공립 보통학교	5학년 생도들이 맹휴. 교장에게 이우서 제출. 교사들이 생도들에게 조선말을 못하게 하며, 조선말을 하면 벌로 청소를 시키거나 인정에 벗어나는 폭행을 가함.	동아 1921. 5.26.
1923. 4.	전남 함평공립 보통학교	6학년생 13명이 담임 혼도 세키 요시히코(關芳彦)가 생도에게 무리하게 난폭한 행동을 한 데 대해 항의하여 맹휴.	조선 1923. 4.21.
1923. 5.	황해도 안악공립 보통학교	5,6학년 생도들이 맹휴. 6학년 담임 모토이시 가즈오(本石一夫)가 학식도 없으면서 수업 중 학생을 함부로 때리고 야비한 말씨를 씀	동아 1923. 5.12.
1923. 5.	전주 제일공립 보통학교	4학년생 40여명이 담임교사 일본인 도요다(豊田)가 월사금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생도들을 때려 맹휴.	동아 1923. 5.21.

11) 일부 맹휴의 경우에는 신문에 보도되었으나, 사유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 신문에 보도되지 않은 작은 규모의 맹휴도 상당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들은 이 표에서 제외되었음을 밝혀둔다.

1924. 2.	전북 고창공립 보통학교	사립암치보통학교에서 쫓겨난 교원 우에하라 도쿠신(上原篤信, 42)이 고창공립보통학교로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생도들을 함부로 구타하고 부정한 행위가 많다 하여 학생들이 일시 맹휴. 학부형들이 긴급회의, 우에하라의 해임을 군청과 도청에 건의.	동아 1924.2.19.
1924. 6.	전북 고창 홍덕공립 보통학교	홍덕보통학교 2년생 최예기가 소학교 소유림에서 수제국기간(手提國旗竿) 한 개를 벌취하려다가 소학교장 시노자키 스케다로(篠崎助太郎)에게 중상을 당한 사건에 분개하여 동맹휴교.	동아 1924. 6.18.
1925. 6.	경남 동래군 사하공립 보통학교	5학년생 최규영이 교내에서 금전을 분실한 사건과 관련하여 5학년 담임선생 김대현이 동 같은 학급 장순일을 혐의자로 생각하여 자백하라고 강요하면서 송곳으로 찌르고 마구 구타하여 이에 분개한 학생들이 맹휴.	동아 1925.6.8.
1925. 10.	황해도 황주 사립양성학교	4학년생 40여명이 담임교사 박성하가 부임한지 불과 2,3개월에 자주 학생을 구타하고, 수업 시간에 학생이 모르는 것이 있어 물어보면 너의 집에 가서 옥편 찾아보라고 하고, 책으로 학생의 면상을 때려 코피를 내게 하는 등 교원의 자격이 없다 하여 맹휴.	조선 1925. 11.1.
1926. 6.	경기도 강화군 길상공립 보통학교	5,6학년생이 순종황제 승하의 비보를 접한 후 상장(喪章)을 달 았다고 일본인 이쿠타(生田) 교장과 스이토(水藤) 교원이 무수히 난타하여 5,6학년 학생 전부가 동맹휴학.	동아 1926. 6.17.
1926. 7.	평북 의주 공립 보통학교	5학년의 일본인 담임교사 히카리이에 가쓰히사(光家勝久)는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습을 주로 하라 하여 학생들이 수업을 해달라고 학교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반장 고동욱(17)을 직원실로 불러 무수히 난타하여 약 20분간이나 깨무러치게 함에 5학년생들이 맹휴를 실시.	동아 1926. 7.20
1926. 10.	경기도 고양군 승인공립 보통학교	4학년생 41명은 담임 미와 마케키(三輪萬吉)가 수업 중 대수롭지 않은 일에 생도 김문석을 채찍으로 난타하여 전신이 핏빛이 되고 땀땀 부어 눈으로 보기에도 참혹한 부상을 입힌 것에 분개하여 동급생 대회를 열고 그에 동정하여 맹휴.	동아 1926. 10.10.
1926. 10.	전북 순창공립 보통학교	훈도 미치타 모토토요(瀧田基豊)는 동교 사무실에서 5학년생 임선주의 머리를 죽장으로 몹시 때려서 큰 상처를 내게 하여 선혈이 낭자하였고, 그 이전에 4학년생 최중선의 뺨을 함부로 때려서 귀가 먼 일도 있어 당시 청년회와 노동조합에서는 임시위원회를 열고 응징책을 토의한 결과, 전기 미치타 훈도에게 경고를 하기로 함.	동아 1926. 10.27.
1927. 4.	경남 김해공립 보통학교	5학년 담임 일인 교원 마쓰시타 고로(松島五郎)가 점심시간에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학생의 손가락 사이에 만년필을 넣어서는 혹독한 형벌을 하는 일이 비밀비재하고, 또 마쓰시타 선생은 평소 조선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말을 자주 하였으며, 또 조그마한 과실이라도 있으면 학생을 유도로써 체계를 하는 일이 종종	조선, 동아 1927. 4.19.

		있어 이에 항의하기 위해 맹휴.	
1927. 6.	강원 평강 공립 보통학교	5학년 훈도 미야타케 도라오(宮武虎雄, 25)는 자기 학급 생도가 지도하는 말을 잘 듣지 아니하면 함부로 때리는 것이 상습적이며, 근일 생도 하나는 맞아서 귀가 먹었고, 한 생도는 때를 맞아 신음하고 있다 하여 5학년 생 68명이 맹휴.	중외 1927. 6.23.
1928. 2.	함남 영흥진흥공립 보통학교	오학년 생도들이 담임이 항상 고압적 태도로 임하고 수업시간을 잘 지키지 않으며, 지각생들에게 무리한 벌을 세우는 것에 반발하여 맹휴.	중외 1928. 2.22.
1929. 11.	함남 고원 공립보통학교	4년생 백여 명은 담임 스키모토(杉本) 교사가 난폭한 언사를 자주 쓰고, 구타를 가하여 생도 1명이 졸도시킨 뒤에도 생도들에게 너희들도 이후에 졸도시킬 수 있다고 폭언을 한 데 대해 그를 배척하여 맹휴.	동아 1929. 11.22,26
1933. 10.	전남 광양공립 보통학교	6년생 도양수(15)가 훔물은 발로 5학년 교실 입구에 들어왔다고 5년생 담임 마키하라(牧原) 교원이 그를 난타하여 현장에서 일시 혼도케 한 것에 5학년생이 분개하여 동맹휴학. 해당 교원으로서 인하여 일어난 맹휴로는 세번째.	동아 1933. 10.22.
1934. 10.	경북 영일군 동해 공립보통학교	3,4학년 생도 80여명이 10월 22일 비가 음에도 불구하고 종일 실습을 했는데, 일을 부지런히 하지 않는다 하여 교장과 훈도 이(李)모가 4학년생 10인을 구타한 것에 분개하여 맹휴를 단행	동아 1934. 10.30.
1936. 5.	강원 흥진 성산 공립보통학교	교장 아키야마 시유이치(秋山秀一, 32)가 부임한 이후 생도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하고, 실습을 한다고 힘든 노역을 시켰고, 3,4학년 생도 몇 명이 교실에 들어가며 발을 굴렀다고 한 시간 이상 벌을 세운 것에 불만을 품고 3,4학년 80여 명이 맹휴.	동아 1936. 5.16.

<표 9> 교사의 실력 부족과 불친절, 무성의, 불공정, 무리한 처벌로 인한 맹휴

발생 연도	발생학교	맹휴의 원인과 경과	기사 출전
1921. 5	경남 거창 공립보통학교	1학년을 제외한 전교생이 일본인 교장의 학생들에 대한 불친절, 학교일에 열중하지 않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맹휴 단행. 이에 학교측은 2명 퇴학, 5명 정학 처분. 학생들은 이에 분개하여 맹휴 계속.	동아 1921. 5.29.
1922. 6.	경기도 부천 공립보통학교	2,3,4,5학년 생도 이백여 명이 일본인 교장 미야우치 츠기(宮内忠義, 40)에 대한 불만으로 맹휴. 학생들에 의하면 교장은 학교에 성의가 없어 학과를 시간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생도에 대하여 조선인을 멸시하는 관념으로 공연히 때리고 모욕하였으며, 학교 하인을 자기 집에 데려다 썼고, 조선인 선생을 자기 집으로 불러다가 밥도 짓고 걸레질도 시켰다고 한다.	동아 1922. 6.29.

1923. 2.	전북 용안 공립보통학교	3,4학년 생도 240명 전부가 맹휴. 일본인 교장이 자주 결근하고 수업을 매우 불친절하게 하며, 생도가 불만스러워 하면 욕설을 하거나 때리기도 함.	동아 1923. 2.10.
1924. 6.	평남 성천공립 보통학교	5학년생 30여명이 담임교원 미승락의 교수 불충분과 무성의에 동맹휴학을 단행하기로 하고, 평남도 학무국에 진정서를 보냈는데, 학생 중 두 명이 이를 교원에게 밀고하여 교원들이 학생 십여 명을 사무실에 구금하고 뺨을 때리고 발길로 차는 등 구타한 뒤, 4명을 퇴학시키고 7명을 정학에 처한 사건.	동아 1924. 6.22.
1925. 4.	평북 창성 공립보통학교	고등과 2학년생 23명이 담임 교원 사카다(坂田) 선생은 무자격하다는 이유로 전입시켜 달라고 지난 달 23일 822호의 우편 서류로 사카다의 결점 8개조를 들어 학무과장에게 애원의 진정서를 제출.	동아 1925. 4.16.
1925. 7.	전북 금산군 제원 공립보통학교	2학년 담임교원 이치하가 시험성적 평가에서 불공정하게 하고, 평소 유산자와 무산자를 현격히 구별하는 등 불공평함에 분개하여 2학년 생도들이 맹휴.	동아 1925. 7.28.
1925. 12.	경북 안동군 도산공립 보통학교	3학년 담임교원 이모의 자격이 불충분하다고 3,4,5,6학년생 150여명이 그를 해임해달라는 진정서를 학교에 제출. 교장도 그의 자격이 불충분하다는 점에 동의.	조선 1925. 12.20.
1926. 4.	전북 장수 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전부가 담임인 토미다(富田)씨가 교수방법이 충분치 못할 뿐 아니라 성의까지 없으며, 생도들에게 매질만 한다고 배척.	동아 1926.4.30.
1926. 4.	평남 덕천 송정공립 보통학교	교장 야히로 게이사쿠(八尋敬作)는 부임 이래 교칙을 지키지 않아 수업상 불편이 많았고, 학생에 대해 언행이 고약하다는 등 사유로 전에도 동맹휴학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수업 중 4년생 주산이 초학임에도 불구하고 제법(除法)부터 가르쳐 학생들이 이에 잘 모르겠다고 하자, 교장은 모르는 사람은 학교에 오지 않음이 좋다 하여, 이에 4년생 일동이 맹휴.	시대 1926. 4.28.
1926. 5.	평남 진남포제일 공립보통학교	여자부 6학년 생도들이 담임 일본인 여교원 니시우치(西内)가 항상 생도에게 아첨하지 못한 언사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종종 모욕적 행동을 하는 일이 있다 하여 타 교원으로 바꾸어달라고 맹휴. 남자부 6학년 생도들도 사사키(佐佐木) 교장이 수신(修身)을 가르치기로 되어 있지만 1년 동안 6,7시간밖에 가르친 일이 없는 등 성의가 없다 하여 맹휴.	동아 1926. 5.7.
1926. 6.	충북 제천 공립보통학교	교원배치으로 인한 맹휴 계획을 교장 오사키 겐지로(大崎謙二郎)가 경찰에 알려 생도 5,6인을 10여 시간을 취조케 하여 무산시켰으며, 생도를 무리하게 압박하고, 선생과 생도에게 불측한 행동이 많고, 수업료를 내지 않은 학생을 도적놈이라 하는 등 불친절한 언행 등이 많다 하여 맹휴.	동아 1926. 6.17.
1927.	경남 청도공	교장 모리(森)는 평소 비행이 많았는데, 근래에는 그 행동이	동아

5.	립보통학교	우심하여 이에 분개한 학부형들이 학부형회를 열고 위원 10인을 선거하여 8개조의 죄상을 들어 삼 교장에게 질문하기로 결의하고, 또 당국에 진성서를 제출.	1927. 5.29.
1927. 9.	경북 안동군 립보통학교	학부형들은 긴급학부형회를 열어 교장 야기(八木)는 수업 시간에 생도에게 수업은 아니하고 친럽에만 열중하고 모 교원은 작첩을 하여 재반 생도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다른 교원을 보내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아동을 보내지 아니하겠다고 결의.	조선 1927. 9.4.
1927. 11.	경남 하동공립 보통학교	6학년생 백여 명이 요코다(横田) 검입교장 배척과 교원의 태도 개선을 내걸고 맹휴.	동아 1927. 11.27.
1929. 7.	충북 진천 장양 공립보통학교	5학년생 백여 명이 담임으로 있는 무카에 요시오(向永美雄)는 수업이 불친절하여 역사시간에는 교과서와 하등 관계도 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허송하여 일하기 동안에 학습과정은 불과 5과에 불과하는 등 수업에 불충실하다 하여 맹휴를 하려 함. 학생들이 집합하던 중에 경찰이 출동하여 이를 해산시킴.	조선 1929. 7.29.
1929. 10.	함남 고원 공립보통학교	6학년 급장 신정후와 몇몇 동급생들이 실습장에서 무를 먹은 것이 발각되어 교장이 이들을 사무실로 불러 혼계하였는데, 신정후는 사과를 하지 않으므로 교장이 그러면 퇴학을 시키겠다 하자 신정후는 마음대로 하라 한 뒤 학교에 나오지 않고 퇴학으로 처리되자, 동급생들이 이에 반발하여 맹휴에 돌입. 학부형들의 중재로 신정후는 다시 복교되었으나, 교장과 담임이 맹휴에 참가한 학생들을 사무실로 불러 체형까지 가하면서 취조를 한 뒤 7명을 무기정학에 처하자 학부모들이 다시 반발.	중의 1929. 10.20, 23.

<표 10> 교사의 좋지 못한 품행으로 인한 맹휴

발생 연도	발생학교	맹휴의 원인과 경과	기사 출전
1923. 9.	전북고창 사립암치보 통학교	9월 5일부터 5,6학년 80여명이 교원 우에하라 도쿠신(上原篤信, 42)이 술을 과음하여 수업시간에도 주정을 하는 등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다 하여 맹휴.	동아 1923. 9.28.
1924. 10.	전북 금산군 진산공립 보통학교	4,5,6학년 생도 전부가 일본인 촉탁교원 나카모토 가나요(中本加奈代)가 학교앞 주채소 순사 겐코 사부루(乾亨三郎)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는 등 풍기문란 행위를 보며, 촉탁여교원을 배척하는 맹휴를 일으킴. 주채소 순사들이 학생들을 잡아다 때리고 위협.	동아 1924. 10.12.
1925.	황해도 검이포	4,5학년 생도들이 교장 다노베 요시아키(田野邊義顯, 33)과 ¹²⁾	조선

3.5.	공립보통학교	축탁 여교원 이모(24) 사이에 품행이 좋지 않다 하여 맹휴.	1925. 3.5.
1925. 11.	경북 영양군 석보공립 보통학교	훈도 신주택과 5학년 여생도 서학이 사이에 불미한 행동이 있다 하여 학생들이 맹휴를 일으키려다 학부형들의 만류로 보류. 학부형들은 도 당국에 훈도의 해임을 요구.	동아 1925. 11.19.
1927. 6.	평북 자성 공립보통학교	4,5,6학년 생도 140여 명이 동교장 후지이 겐타로(藤井賢太郎)군이 동교 여 훈도 모씨에게 비인도적 추행을 감행하려다가 이것이 타로난 것을 계기로 교장을 배척하는 맹휴.	동아 1927. 6.27.
1928. 2.	제주공립 보통학교	학교측에서 항상 학생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교원 강태현은 수업 중에 항상 학생을 구타하고, 정조교육 운운하며 양성(兩性)의 관계를 말하고, 수심가(愁心歌) 등 노래를 고창하여 학생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맹휴. 경찰은 한때 8명을 검속.	동아 1928. 2.29.

<표 11> 교사의 민족차별과 조선 관련 과목 제외로 인한 맹휴

발생 연도	발생학교	맹휴의 원인과 경과	기사 출전
1922. 6.	전남 보성군 복내공립 보통학교	3,4학년 50여명은 일본인 학교장 모리모토 엔쥬로(森本圓十郎)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동맹휴학에 들어감. 학생들의 주장에 의하면, 교장은 생도들에게 항상 불친절하고 또 걸핏하면 조선사람 일반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수업 중 생도들로부터 질문이 있으면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도리어 욕설을 하였고, 창가 시간에 2학년 생도의 머리를 몹시 때리고 발길로 걷어차서 교실 창밖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고 함.	동아 1922. 6.17.
1922. 9.	전남 영암 공립보통학교	5,6학년생들이 일본인 교장을 조선인을 무시하고, 생도를 구타하며, 교사들이 조선어 창가와 조선역사를 가르치지 아니하며, 수업 중 교사의 설명을 이해키 어렵다며 동맹휴학.	동아 1922. 9.20
1926. 2.	함남 영흥군 진흥공립 보통학교	학생의 인권을 절대 압박하고 집회도 역시 절대 금지하며 일본말을 전용하고 조선어는 절대 폐지하라 함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5학년생 80여 명이 맹휴.	동아 1926. 2.20, 21.

12) 田野邊義顯은 1893년 가고시마현(鹿兒島縣) 출신으로, 鹿兒島縣立 志布志中學을 졸업하고, 1914년 3월에 조선으로 건너왔다. 그는 京城高等普通學校 부설 臨時教員養成所를 졸업하고 조선공립보통학교 訓導가 되어 황해도 의 黃州普通學校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銀波公立普通學校長에 임명되었으며, 兼二浦, 席洞, 新院 등의 각 보통학교장을 역임했다. 1931년 3월에 鳳北普通學校長으로 옮겼고, 1933년부터는 鳳西普通學校長을 겸임했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인물검색 결과)

1927. 11.	전북 김제 만경공립 보통학교	5학년 생도 40여명은 일본인 담임교원에게 조선역사를 가르쳐달라고 했으나 “너희들은 일본 국민인 이상 일본역사만 배우면 그만”이라고 답했고, 학생들이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성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패악하여 학생들이 맹휴.	동아 1927. 11.16.
--------------	-----------------------	--	-----------------------

위의 표들에서 본 바와 같이, 보통학교 학생들의 교원 배척운동의 원인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교사의 생도 구타나 체벌’로 19건(일본인 12건, 조선인 7건)이었으며, 두 번째로 많은 것은 ‘교사의 실력 부족과 불친절, 무성의, 불공정, 무리한 처벌’로 16건(일본인 13건, 조선인 3건)이었다. 세 번째로 많은 것은 ‘교사의 좋지 못한 품행’으로 6건(일본인 4건, 조선인 2건)이었다. 그런데 교사의 실력 부족이나 좋지 못한 품행, 민족차별 등의 사례 가운데에는 9건의 무리한 체벌이 포함되어 있다(일본인 7건, 조선인 2건). 그러한 경우를 합하면 교사의 무리한 체벌의 사례는 28건으로 더욱 늘어난다.

한편 <표 10>의 학생에 대한 무리한 처벌로 인한 배척 사례 가운데 함남 고원보통학교의 경우, 교장과 담임이 학부형들과 타협하여 신정후(申正厚)도 복교시킨 뒤에, 다시 맹휴에 가담한 학생들을 체형까지 가하면서 조사한 뒤, 7명을 무기정학에 처한 일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야노(矢野) 교장은 “이 동맹 사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든지 학부형과 타협한 바도 있지만, 무사 해결됨을 진력하였으나 도 당국 학무과장으로부터 이 사건은 단순히 고원보교에만 한한 문제가 아니고 일반 사회의 문제가 되는 동시에 하급 생도에게도 악영향을 줄 염려가 있으니 엄중히 처벌하고, 또 다시 동맹을 단행하면 모두 퇴학시켜도 좋다고 하는 명령이 있었고, 경찰과 학교당국에서도 조사한 결과 7명의 희생자를 내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¹³⁾ 도 학무당국에서 맹휴에 가담한 학생들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지시하여 학교 차원에서는 그 지시에 따를

13) 『중외일보』 1929.10.23. 「高原普校盟休事件 益益擴大! 무사해결로 알고 등교한 학생을 함부로 구타하고 퇴학까지」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총독부와 도 학무당국이 학생들의 맹휴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잘 말해준다.

3. 교원배척 맹휴의 배경

보통학교 생도들의 맹휴가 자주 일어나자, 총독부 학무국에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그 중에는 교육자의 인격, 소양, 지식 등의 표준이 옛날의 교육자보다 꽤 낮아져 생도들의 경모(敬慕)하는 생각이 적어져 필경 배척을 받게 되어 이로 말미암은 동맹휴학 사건이 가장 많았다”고 결론을 내렸다.¹⁴⁾ 즉 일부 교원의 인격, 소양, 지식이 문제라는 것이었다. 당시 사회단체나 언론도 역시 같은 시각을 보이면서, 당국에 이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자주 촉구하였다. 그런데 사회단체나 언론에서 잘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교원들의 학생들에 대한 지나친 체벌과 폭행도 큰 문제였다. 이제 이와 같은 교원을 자질을 둘러싼 논란을 교원으로서의 소양과 인격 수양의 부족, 교원의 지나친 체벌과 폭행, 교원으로서의 실력의 미흡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교원으로서의 인격과 소양의 부족

보통학교 생도들의 맹휴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교원으로서의 인격과 소양의 부족 문제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불친절, 무성의, 불공정 등의 문제, 교사들의 공금의 사적 유용, 잦은 술집 및 기생집 출입과 술주정, 여학생들에 대한 성추행과 성폭행, 욕설과 민족감정

14) 『동아일보』 1927.9.18. 「학교 맹휴의 主因은 교원 소질의 低劣, 流行的인 학교맹휴의 원인」

을 담은 발언을 통한 학생들의 인격 모독 등이 맹휴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앞의 문제들은 위의 맹휴 사례에서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 사례를 생략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학생들의 인격을 모독한 사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1923년 나주공립보통학교에서 있었던 4, 5, 6학년의 동맹휴교는 “소메가와(染川) 훈도의 비열한 언사가 아동의 감정을 상하게 하였고, 조선인을 자주 모욕했기 때문”이었다. 충남 청양군 화성면 공립보통학교 3,4학년 생도의 맹휴는 “교장이 교수 시간에 조선인에게 대한 욕설을 자주 했기 때문”이었으며, 평북 영변 공립보통학교 6학년 생도의 맹휴는 “스즈키(鈴木) 훈도가 조선인에 대한 모욕과 악담을 자주 했기 때문”이었다.¹⁵⁾ 교원으로서의 소양과 인격 부족은 학생들에 대한 인격 모독으로 이어져 맹휴를 유발했던 것이다.

또 맹휴와는 관련이 없었지만 교원의 여학생 성폭행 사건들을 들어보자. 대전의 모 보통학교 교원 임서철(林瑞喆, 21)은 14세밖에 안 된 여학생을 성폭행하였다가 경찰에 구속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¹⁶⁾ 또 충북 보은군의 교원 이(李)모(24)는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학급의 12~16세 되는 여학생 여섯 명을 방과 후에 교실에서 차례로 성폭행하였다가 경찰에 구속되었다.¹⁷⁾

총독부 학무국도 교원으로서 필요한 인격과 소양이 부족한 교원들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1927년 9월 총독부 학무국은 각 도시 사에게 공문을 보내 교원의 채용을 신중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교육자의 소질이 열등하여 교육자로서 적당치 못한 자가 많으니, 관하 각 학교를 엄밀히 감시하여 소질이 불량하다든지 자격이 적당치 못하다

15) 『동아일보』 1923.4.26. 사실 「普通學校 敎員의 人格 向上에 努力하라」

16) 『조선일보』 1933.12.24 「제자에게 폭행한 교원 공판 회부. 7개월만에 예심종결」

17) 『조선일보』 1938.7.15. 「神人共怒할 此事實 소학교원의 暴狀. 가르키는 소녀 6명에게 폭행. 충북교육계의 대치욕」

든지 인격이 고상치 못하여 교육자로서 적당치 못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용서없이 도태하여 교육계의 공기를 확청(廓淸)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고 한다.¹⁸⁾ 이에 각 도에서는 각 군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최근 각처에 빈발하는 학교 생도 이동들의 동맹휴학은 교장 또는 교원을 배척하는 것으로, 그 근본 원인은 교장 교원의 인격과 식견의 결여와 또는 소행이 아름답지 못하고 자격이 없는 자들로 소질이 열등하고 교수에 친절치 못한 것 등으로, 무엇보다 교원을 엄밀히 선택하여 종래의 교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당연히 정당한 처치를 하라는 것”이었다.¹⁹⁾ 결국 총독부에서도 학생들의 맹휴의 주요 원인이 교사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불량교사’들을 도태시키도록 지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1면1교 정책으로 보통학교의 수는 계속 늘어남에 따라, 교사는 계속 부족했다. 때문에 교사의 단기양성도 계속되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른바 불량교사를 정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결과 1930년대 초까지 불량교원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맹휴는 계속되었고, 1933년에도 총독부 학무당국은 “불량교원은 금후부터는 용서없이 배격하는 동시에, 가급적 많은 기회에 교육계의 권위자를 초빙하여 강습회 혹은 수양회 같은 것을 개최함으로써 문화교육의 전수를 철저히 하기로 하였다.”고 말하기도 했다.²⁰⁾

그러나 일시적인 강습회나 수양회 정도로 교원의 인격 수양이 이루어질 리는 만무했다. 결국은 일정한 기간 동안의 교육과정을 통해 교원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격 수양 과정이 필요했다. 그러나 총독부는 사범학교를 증설하는 데에는 인색했다. 1930년대 초 관립사범학교는 경성, 대구, 평양

18) 『동아일보』 1927.9.18. 「학교맹휴의 主因은 교원소질의 低劣. 학무국에서 廓淸방침」

19) 『동아일보』 1927.9.25. 「맹휴와 단속, 교원 선택을 하라고」

20) 『동아일보』 1933.11.9. 「不祥事件 빈발로 不良教員 大淘汰, 素質이 나쁘면 용서없이 處斷, 學務當局의 一方針」

의 세 곳밖에는 없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1934년 총독부 학무당국은 “사범학교의 과정을 늘려 교원의 소질을 향상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나, 그 결과는 자연히 대우를 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므로, 조선으로서는 경비 문제가 있으므로 실행은 상당히 곤란할 것이다. 더욱이 조선으로서는 간이 학교라도 신설하여 먼저 초등교육의 보급을 도모치 않으면 안 될 상태에 있으므로 고급 교원 양성보다 일반적 교원 양성이 급무”라고 말하였다.²¹⁾

그러나 학교와 학생 숫자가 날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사범학교의 증설을 언제까지나 미루어둘 수는 없었다. 결국 총독부도 1935년 이후 1941년까지 경성여자사범학교, 전주사범학교, 함흥사범학교, 광주사범학교, 춘천사범학교, 진주사범학교, 청주사범학교, 공주여자사범학교의 순차적인 신설의 방식으로 사범학교를 늘려갈 수밖에 없었다.

2) 지나친 체벌과 폭력

앞서 본 것처럼 보통학교 학생들이 맹휴를 일으킨 가장 큰 원인은 교원의 지나친 체벌이었다. 위의 사례들을 보면 교사들은 학생들이 지각을 하거나, 교실에서 떠들거나, 실습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금전을 훔쳤다고 의심이 되거나, 조선말을 하거나, 월사금을 가져오지 않는다 하여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체벌로는 벌을 세우는 경우도 있었지만, 문체가 된 사례들에서는 나무나 채찍으로 학생들을 구타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심지어 손가락 사이에 만년필을 넣어 고문을 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교사는 금전 분실, 동맹휴학의 경우에는 범인이나 주동자를 찾는다 하여 학생들을 송곳으로 찌르거나 매로 때리는 등 고문을 가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교원들의 가혹한 체벌은 체벌이라기보다는 사실상 폭력에 가까

21) 『동아일보』 1934.1.28. 「師範改善, 朝鮮에 尙早論」

운 경우가 많았다. 1933년 11월 경기도 왕십리보통학교에서는 교사의 폭력으로 생도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이 사건은 이 학교 5학년 담임 김종명(金鍾鳴) 훈도가 수원으로 전근가게 되자, 5학년생들이 경성역까지 전송을 하겠다고 학교 측에 간청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교실에서 떠들어댔다. 이에 사무실에 있던 수석 훈도 김성달(金性達, 36)이 5학년 교실로 달려가 5년생 어중수(魚鍾洙, 14)와 15명을 교편으로 머리와 팔 등을 몹시 때렸는데, 어중수군은 머리가 뚱뚱 부어 경성제대 병원에 입원했으나 가망이 없었고, 다시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²²⁾

또 1930년 전남 구례공립보통학교 교원 아사다(淺田)는 자기가 가르치는 5학년생 박양순(朴良順, 14)과 박길룡(朴吉龍, 16)이란 두 학생을 학교에서 공공연히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두 학생은 아사다 선생이 어느 학생을 부르는 소리를 잘못 듣고 다른 학생보고 선생님이 부른다고 전해주었는데, 아사다는 선생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 하여 두 소년을 불러서 마구 때리고 차서 두 소년은 한때 정신을 잃고 기절했다. 선생은 두 소년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찰을 시켜 약을 주고 현금 오십 원을 주어서 집에 일찍 돌려보냈다고 한다.²³⁾

1931년 평남 안주공립보통학교 교원 이토 고고로(伊藤小五郎)은 부임 이래 학생들을 무리하게 구타한 일이 많았는데, 3월 15일에 윤득영(尹得榮, 12)이라는 아이를 이유 없이 난로에 석탄 때 넣는 부삽으로 얼굴을 포락(炮烙)하여 전치 3주일 이상을 요하는 중상을 입혔다고 한다. 이에 학부형들과 사회단체에서는 모임을 갖고 23일 학교로 몰려가 교장과 문제의 교원

22) 『조선일보』 1933.11.7. 「訓撻에 傷한 아동, 입원가료 중 사망, 부친은 선생을 상대로 고소 제기. 김성달은 경성고보 부설 임시교원양성소 졸업한 훈도였다(한국역사통합정보시스템 인물검색 결과).

23) 『조선일보』 1930.10.14 「些小한 誤解로 學生을 毒打. 생도 두 명을 혼절하도록 때리고 과자 땃개로 무마, 求禮普校教員 淺川의 暴行

에게 항의하는 등 사회적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²⁴⁾

이와 같은 일부 교원들의 지나친 체벌과 폭력에 대해 『동아일보』는 사실을 통해 “동래군 사하공립보통학교 생도의 동맹휴교는 어린 생도를 교사가 감금하고 고문을 하여 몸에 적지 않은 상처를 냈기 때문이라 한다. 만일 교육자가 교육자다운 소양이 있고 덕의가 있다 하면, 설혹 불량한 소년을 발견하였을지라도 그것을 지도하고 부액(扶掖)하는 방법이 있었을 터인데, 이러한 무식하고 폐악한 방법으로 대한 것은 그 교육자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표시함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지적하였다.²⁵⁾ 이 신문은 교원들의 이와 같은 행태의 원인을 인격 수양의 부족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의 교원들의 지나친 체벌은 학교 내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던 폭력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그런데 특히 과도한 체벌과 폭력을 행사한 이들 가운데에는 일본인 교원들이 많았다. 앞서 본 사례 28건 가운데 19건이 일본인 교사나 교장에 의한 것이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1879년 일본 정부가 반포한 「교육령」을 보면 “모든 학교에서는 생도에게 체벌(구타 혹은 묶는 경우)을 가할 수 없다”는 규정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1890년 이후에는 「교육령」에서는 빠졌지만 「소학교령」(개정)에서 “소학교장 및 교원은 아동에게 체벌을 가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1900년에는 “소학교장 및 교원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동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지만, 체벌을 가할 수는 없다”는 규정으로 바뀌었다.²⁶⁾

이와 같이 근대 일본에서는 체벌이 법령으로 명확히 금지되어 있었다.

24) 『조선일보』 1931.3.22. 「安州公普校 교원이 폭행. 학생을 부삽으로 때리어 전치 3주일의 중상」

25) 『동아일보』 1925.6.9. 사실 「學生과 教師간의 紛糾 - 특히 普校 教員 素質에 대하여」

26) 沖原豊, 1980 『體罰』, 第一法規出版株式會社, 203~204쪽

그러나 실제로 차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학자들은 당시에 각급 학교에서 차별은 일반적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고 본다. 그것은 차별과 관련된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교사가 생도의 허리를 발로 차서 사망한 사건까지 있었다.²⁷⁾ 이처럼 차별이 자주 행해지는 가운데, 1916년 요코하마, 후쿠오카 법원 등에서는 교사의 차별에 의한 상해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었다. 또 교육학자들도 차별에 꼭 반대만은 하지 않았다. 경도제국대학 교수인 고니시 시게나오(小西重直)는 차별에 원칙적인 반대를 표명하면서도 “차별도 절대적으로 배척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였다. 동경제국대학 교수인 요시다 구마지(吉田熊次)도 차별에는 기본적으로는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인격의 존중이라는 입장에서 차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는 반드시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²⁸⁾ 이와 같이 재판소나 교육학자들이 차별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부정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 것은 당시 차별에 일정한 교육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어떻게 초래되었을까. 이에 대해 에모리 이치로(江森一郎) 교수는 군대의 영향을 들고 있다. 그는 명치 10년, 즉 1878년 이후 일본은 군사와 교육을 2대 지주로 하여,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추진해온 프러시아를 모델로 하여 근대화를 추진케 되었는데, 당시 제국육군과 해군의 교육 방법은 학교에서의 차별 남용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특히 1885~1889년 초대 문부대신을 지낸 모리 아리노리(森有礼)은 교육제도의 기초를 확립하였는데, 당시 상하관계를 기본질서로 하는 군대의 규율과 훈련의 방법을 학교에 도입했고, 이것은 결국 학교 내에서의 사적인 제재나 차별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보았다. 당시 모리가 가장 중시하여 군대 모델로 개조한 것이 사범학교의 기숙사였다. 이후 학교의 질서는 상명하복

27) 沖原豊, 위의 책, 205쪽

28) 沖原豊, 위의 책, 2206~207쪽

의 문화로 자리 잡았고, 이 가운데에서 교사에 의한 가혹한 체벌 문화도 배태되었다고 에모리 교수는 설명한다.²⁹⁾

오에 시노부(大江志乃夫) 교수에 의하면 메이지(明治) 시대 일반 사회에서의 체벌의 미만(瀰漫)은 1908년 군대 내의 내무질서를 개정하는 지침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그 이전까지는 하급 하사(下士)는 병졸과 마찬가지로 폭력에 의해 지배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내무질서 개정에 의해 병졸에 대한 폭력지배의 말단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내무반 제도가 창설되어 하급하사는 내무반장으로서 병졸 위에 군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³⁰⁾ 에모리 이치로 교수는 이와 같은 군대의 내무반 제도가 사회 일반, 특히 학교에까지 침투하여 교사와 학생 간의 상하관계도 폭력에 의해 지배되는 관계가 되었다고 해석한다.³¹⁾

당시 조선의 보통학교 교장은 거의 대부분 일본인이었고, 교사 가운데 3분의 1은 일본인이었다.³²⁾ 그리고 일본인 교원은 가봉으로 인해, 봉급도 더 많이 받으면서 사실상 학교의 분위기를 지배했다. 따라서 조선의 보통학교에는 일본의 소학교의 문화가 그대로 이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거기에 일본인 교사들의 조선인 아동들에 대한 민족적 멸시감은 가혹한 체벌을 용이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1910년대의 「조선교육령」에는 체벌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 1911년에 공포된 「보통학교규칙」에서도 “훈육상 필요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이 시기 보통학교 학생에 대한 가혹한 체벌을 견제

29) 江森一郎, 1989 『體罰の社會史』, 新曜社, 252~253쪽. 金成學 교수는 한국에서도 1880~1910년 사이에 세워진 신식 학교에 군대식 학교 규율이 들어왔다면 그 근거로 군대식 체조를 들었다. 金成學, 2006 「군대식 학교 규율의 등장과정과 사회적 기능 : 1880~1910」 『교육사회학연구』 16권 4호 참조

30) 大江志乃夫, 1981 『徵兵制』, 岩波新書, 東京, 110쪽

31) 江森一郎, 앞의 책, 254쪽

32) 山下達也, 2011 『植民地朝鮮の學校教員』 九州大學出版會 30쪽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었다. 그러다가 1922년에 개정된 「보통학교규칙」에서는 “교육상 필요한 징계를 아동에게 가할 수 있지만, 체벌을 가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 들어갔다.³³⁾ 그렇다고 해서 체벌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학교 체벌의 상황은 앞서 든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중학교나 사범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³⁴⁾ 1938년 조선에서 공포된 「중학교규정」이나 「사범학교규정」에서는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생도들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체벌을 금지한다는 규정조차 아예 없었다.

3) 실력의 미흡

앞서 본 것처럼 보통학교 맹휴의 또 하나의 주요 원인은 ‘교수법에 대한 불만’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는 사실은 ‘교원의 실력 미흡’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었고, 이것은 교원 양성제도의 미흡과 관련이 있었다. 1910년대 조선에는 사범학교가 없었고, 경성고보 등에 1년 코스의 사범과, 또는 교원속성과가 있었다. 또 1~3년 코스의 임시교원양성소가 있었다. 이들 과정을 통하여 교원을 양성하여 교원으로 임용하였기 때문에, 이들 교원의 ‘실력의 미흡’은 항상 지적될 수밖에 없었다. 1920년대에는 경성사범학교, 각 도립사범학교가 설치되었지만, 주로 조선인 교사를 양성하는 도립사범학교는 2~3년 코스로서(이른바 ‘사범특과’), 주로 일본인 교사를 양성하는 경성사범학교의 6년 코스에 비교가 되지 않았다. 1929년 이후 사범학교가 증설되었고, 1930년대 이후 8개의 사범학교가 증설되었지만, 교원의 수를 감당하지 못했다. 위의 과정 가운데 단기과정(고보 사범과, 교원속성과,

33) 김경자 외, 2005 『한국초등교육의 좌절 : 일제강점기 초등교육』, 教育科學社, 224~251쪽

34) 박哲熙, 2003 「일제강점기 중등학교의 학생규율」 『교육비평』 12, 325~326쪽

임시양성소, 사범특과)을 마치고 교원자격시험(제2,3종으로 구분)에 합격하면 교원이 될 수 있었다.³⁵⁾

따라서 1923년에 한 신문은 사설에서 “23만인 내외의 공립보통학교 아동에게 접하는 4천4백 명(내역 일본인이 1,260명, 조선인이 3,140명)의 교원이 그 소질은 어떠한가. 조선인 교원으로 말하면 상당한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 극히 소수일 뿐 아니라, 근년에 이르러서는 공립농업학교 졸업생이나 간이한 강습소를 수료한 자를 채용하였나니 독서가 부족한 우리 사회에서 그 다대 부분은 소양이 심히 부족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³⁶⁾ 이는 사범학교를 나온 교원보다는 임시양성소와 같은 단기교육과정을 통해 교원이 된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1928년에도 이 신문의 또 다른 사설은 교원 가운데에는 “불과 5,6개월의 연습을 하고 그 자리에 나간 자가 태반”이라고 지적하였다.³⁷⁾

앞서 본 전라남도 시학을 지낸 야스다 야스노리는 “1919년 이후 향학열이 갑자기 발흥하여 입학지원자가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학교가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나 교원의 양성은 이에 따르지 못하여 교원을 속성으로 양성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학력이 불충분한 교원이 축출(簇出)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 학력이 불충분한 교사 가운데에는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6개월 내지 1년의 강습을 받고 교사가 된 경우도 있고, 제3종의 시험에 합격하여 훈도로서 판임관의 자격을 얻은 교사도 있는데, 이들의 다수는 소성(小成)에 안주하여 스스로를 대단히 위대한 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여 수양을 게을리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력은 극히 불충분함을 면치 못한다. 이 학력의 불충분함이 아동에게 간파되어 동맹휴교를 낳는 일이 가끔 있다.”라고 말하였다.³⁸⁾ 즉 교원의 급속한 양성과 그에 따른 교원

35) 교원 양성과 관련해서는 각주 1)의 논문들을 참조.

36) 『동아일보』 1923.4.26. 사설 「보통학교 교원의 인격향상에 노력하라」

37) 『동아일보』 1928.6.8. 사설 「普校 교원의素質 문제」

의 실력 저하가 학생들의 맹휴를 유발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교원의 실력 문제와 관련하여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은 1920년에 ‘교원의 실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³⁹⁾ 이후 각 도에서는 교원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방학 중에 교원강습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1921년 총독부는 매년 교원 강습회를 경성사범학교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공립보통학교 조선인 교원 강습회를 1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두 달간 개최하며, 공립보통학교 일본인 교원 조선어 강습회를 6월 1일부터 6월말까지 한 달간 개최하며, 공립보통학교 조선인 부훈도 교원 강습회를 7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경성사범학교에서, 그리고 9월 1일부터 1월말까지 평양고등보통학교에서 각각 5개월간 개최한다는 것이었다. 조선인 부훈도 강습회 기간을 다소 길게 잡았지만, 그 대상 인원은 100명에 지나지 않았다.⁴⁰⁾

결국 이와 같은 임시방편적인 교원강습회만으로 교원의 실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는 당시 총독부 당국자도 인정하는 바였다. 1926년 총독부의 한 당국자는 일본 내지와 조선의 보통학교, 소학교 교원의 소질에는 천양지차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경성 시내 보통학교 교장, 소학교 교장들은 각각 회의를 갖고, 총독부 학무국장 이진호(李珍鏞)에게 항의문을 보내 이에 대한 원만한 회답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⁴¹⁾

보통학교 교장들의 이와 같은 반발이 있었지만, 보통학교 교원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고, 당시 교육계에서는 교원의 실력 향상

38) 安田保則, 앞의 책, 285쪽

39) 『동아일보』, 1920.9.10. 「도지사에게 대한 총독지시(3) 학무 교원양성」 ; 1922.5.11. 「총독지시사항(8) 학무에 관한 건(8) 교원의 소질 개선」

40) 『동아일보』 1921.4.14. 「교원강습회 개설」

41) 『동아일보』 1926.5.20. 「당국의 부당한 언사로 각 普校長 奮起, 십칠일 회의를 열고 결의」

을 위해서는 사범학교를 증설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1920년 6월 교원강습회에 참여한 교원들 스스로도 완전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사범학교를 증설해달라고 총독부 당국에 청원하였다.⁴²⁾ 또 1921년 4월 장덕수, 김종범, 김명식, 오상근 등 70여 명이 조직된 조선교육개선회는 우선 보통학교 설립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고등보통학교와 사범학교를 각 도에 1개 이상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총독 부측에 제출하였다.⁴³⁾ 그러나 사범학교가 증설된다고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앞서 본 것처럼 사범학교도 상명하복의 문화, 체벌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맺음말

1921~28년 사이 발생한 조선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맹휴 사건은 초등 학교의 맹휴가 342건, 중등 이상 학교의 맹휴가 460건으로 모두 802건이 된다(이 가운데에는 일부 중복 계산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맹휴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중등 이상의 학교에서는 교원배척이 54.6%, 학교설비개선 요구가 18.9%, 사상문제(민족의식 및 좌경적 사상의 영향)가 14.1%를 차지했다. 그리고 초등 학교에서는 교원배척이 53.5%, 학교설비 개선이 13.4%, 엄격한 훈육과 교칙에 대한 반발이 11.4%를 차지했고, 사상문제는 2.6%에 지나지 않았다. 즉 초등 학교에서는 아직 민족의식이나 좌경적 사상의 영향으로 인한 맹휴 건수는 적었으며, 교원배척과 관련된 맹휴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신문 기사에 나오는 교원 배척과 관련된 맹휴 사건의 맹휴 이유를

42) 『동아일보』 1920.6.17. 「普校 교원 건의」

43) 『동아일보』 1921.4.9. 「교육개선을 위하여, 有志 칠십여명이 기관을 조직」

보다 세분해서 살펴보면, 1) 교사의 생도에 대한 구타나 체벌, 2) 교사의 실력 부족과 불친절, 무성의, 불공정, 3) 교사의 좋지 못한 품행, 4) 학생에 대한 무리한 처벌, 5) 조선역사나 창가를 가르치지 않는 것, 6) 교장이나 교사의 민족차별의식에 대한 반발 등으로 정리된다.

그리고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것은 교사의 생도에 대한 구타나 체벌의 경우였다. 당시 교사들은 학생들을 엄격하게 훈육한다는 명분으로 여러 유형의 체벌을 가하였다. 일부 교사들은 단순히 벌을 세우거나 교편으로 학생들의 종아리를 때리는 수준을 넘어, 뺨을 때리거나 채찍으로 전신을 구타하거나, 발길로 마구 차거나 하여, 학생들이 부상을 입거나 졸도하거나 심지어는 사망하는 경우까지도 있었다. 이는 체벌이라기보다는 사실상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교사들의 가혹한 체벌 내지는 폭력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맹휴 사건 가운데에는 일본인 교사들과 관련된 사건들이 조선인 교사들과 관련된 사건보다 많았다. 당시 보통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본인 교장과 전체 교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일본인 교사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한 가혹한 체벌의 문화는 식민지 조선의 학교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들은 체벌이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던 일본 소학교의 체벌 문화를 조선의 학교에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선인에 대한 인종적 차별의식을 가진 일부 일본인 교사들은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조선인 생도들에게 가혹한 체벌 내지는 폭력을 행사했다. 당시 이와 같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일본인 교사나 교장은 조선인 교원에 비해 2배 이상의 봉급을 받고 있어 학교비 예산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부가 이들을 지속적으로 임용한 것은 식민지 조선에서 초등교육의 주도권을 일본인 교원들에게 맡기기 위한 것이었다.

교사들에 대한 배척의 또 다른 원인은 교사들의 실력의 부족과 인격의 미흡이었다. 이는 교사로서의 소양 부족의 문제로 요약되는데, 이는 당시

보통학교 교사의 양성 시스템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1920년대 초까지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학교는 경성사범학교 하나밖에 없었고, 1923년 이후 각도에 공립사범학교를 세웠지만, 1929년에 대구와 평양 외에는 모두 폐지해 버렸다. 따라서 1920, 30년대 보통학교 교원의 대부분은 6개월 혹은 1년 과정의 임시교원양성소 또는 강습과 출신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당시 조선교육개선회는 사범학교의 증설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총독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범학교가 증설된다고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사범학교도 이미 상명하복과 체벌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투고일자 : 2017. 1. 24. 심사일자 : 2017. 2. 1. 게재확정일자 : 2017. 2. 25.

주 제 어 : 식민지기 동맹휴학, 보통학교, 교사배척, 교원양성, 체벌

Key words : unified student strikes during the colonial period, General 'Botong' schools, rejecting the teachers, raising and training teachers, administrative punishment

참고문헌

- 김경자 외, 2005 『한국초등교육의 좌절 : 일제강점기 초등교육』, 教育科學社
- 金性玫, 2013 『1929년 광주학생운동』, 역사공간
- 金英宇, 1987 『韓國近代敎員教育史. 1 : 初等學校 敎員養成教育史』, 正民社
- 吳成哲, 2000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 江森一郎, 1989 『體罰の社會史』, 新曜社, 東京
- 弓削幸太郎, 1935 『朝鮮の教育』, 自由討究社, 東京
- 大江志乃夫, 1981 『徵兵制』, 岩波新書, 東京
- 本間千景, 2010 『韓國‘併合’前後の教育政策と日本』, 思文閣出版
- 山下達也, 2011 『植民地朝鮮の學校敎員』, 九州大學出版會
- 朝鮮總督府 官房文書課, 1926 『朝鮮の群衆』
- 朝鮮總督府警務局, 1929 『朝鮮における同盟休校の考察』
- 佐野通夫, 1996 『近代日本の教育と朝鮮』, 社會評論社, 東京
- 沖原豊, 1980 『體罰』, 第一法規出版株式會社, 東京
- 幣原坦, 1919 『朝鮮教育論』, 六盟館, 東京
- 金廣珪, 2013 「日帝強占期 朝鮮人 初等敎員 施策 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 金洪周, 2010 「光州學生運動 以前 同盟休學의 性格」 『韓國獨立運動史研究』35
- 朴哲熙, 2003 「일제강점기 중등학교의 학생규율」 『교육비평』 12
- 이기훈, 2007 「日帝下 普通學校 敎員의 社會的 位相과 自己認識」 『역사와 현실』 63호
- 李元必, 1987 「일제하 교원양성제도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 林後男, 2002 「大韓帝國期에 있어서의 初等敎員의 양성」 (서울대 박사논문)
- 朴永奎, 2005 「植民地朝鮮における敎員養成に關する研究」 (九州大學 博士論文)

<Abstract>

‘Unified Students Strikes’ in General “Botong” Schools in 1920s Korea, which rejected and boycotted problematic teachers

Park, Chan-seung

In colonized Joseon, and between 1921 and 1928, total of 802 ‘unified students strikes’ occurred, with 342 strikes breaking out in elementary schools and 460 of them inside middle schools and beyond. When we examine the elementary school strikes, we can see 53.5% of them occurred while boycotting teachers, when 13.4% of them demanded bettering school environments and 11.4% of them criticized strict instructions and school rules. Strikes caused by philosophical or ideological reasons only occupied 2.6% of them. In other words, more than half of the elementary school strikes occurred because of the teachers.

Analysis of reports on newspapers of the time reveal that there were several reasons for the teachers to be rejected. First, the teachers’ beating of students. Second, the teachers’ incompetence, unkindness, indifference and unfairness. Third, the teachers’ conducts unbecoming of an instructor. Fourth, their excessive punishments of students. Fifth, teachers’ not teaching the students of Joseon history or songs. And sixth, teachers or the super intendants’ discrimination of the Korean race.

Among all, the most prominent reason that instigated strikes was the teachers’ beating or excessive punishment of the students. At the time, in the name of training them the teachers exacted various types of punishments. And many of these cases were caused by Japanese teachers more often than by Korean ones. Meanwhile, another prominent reason for rejecting teachers was their ‘lack of expertise’ as well as ‘defective characters.’ In other words, many of them had not teacher’s attributes, which was also a problem that was caused by the lack of the teacher raising system for General “Botong” schools at the time.